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20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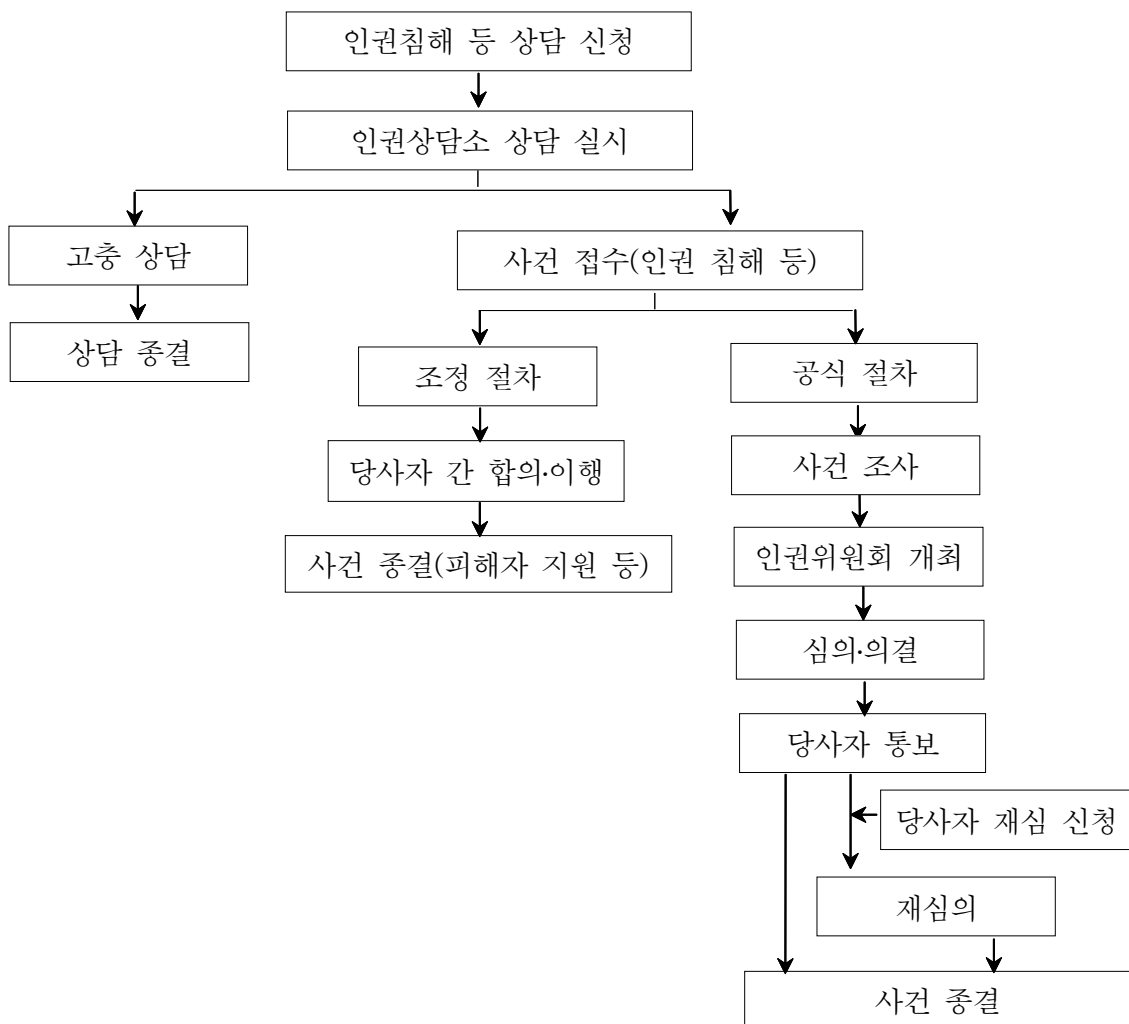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I.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36조(개별기본권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지침

II.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흐름도



III.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세부 내용

1.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사건 접수

상담을 희망하는 개인은 인권·권익 침해 등(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인권상담소 상담 신청서 서식(붙임 1)에 의한다. 개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고충상담

인권상담소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담을 통하여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 고충상담으로 진행된다.

2) 사건 신고 접수

인권상담소 상담으로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인권침해 등 사건 접수 시 처리절차와 과정(조정절차, 공식절차),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절차선택(조정절차, 공식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신고서 양식(붙임 2)에 따른 사건 접수를 받은 후 인권상담소장에게 즉시 보고되며, 사건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1) 신청인이 조정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이 조정 절차를 원할 경우,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정(인권상담소장 또는 소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 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2)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사건 접수를 받은 후 사건조사, 인권위원회 개최, 심의·의결을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3) 사건인지

인권침해 등의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사건 신고 및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2차 가해 중지 요청, 심리상담 등 구제조치 시행 등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인권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1) 사건조사

(1)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다른 기관과의 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신청인(피해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인권상담소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인권위원회 개최

인권위원회는 인권상담소장의 인권위원회 소집 요청에 의해 개최되며, 인권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서 내용 및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의·의결한다.

3) 심의 · 의결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인권침해 등 여부와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에 대해 심의 · 의결한다.

4) 당사자 통보 및 재심

인권위원회는 심의 · 의결에 대한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신청되면 인권위원회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상당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인권위원회 재적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3. 사건 종결

인권위원회의 최종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총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등 작성 조치,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상담 신청서 1부.

2. 인권침해 등 신고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민감정보처리 동의서 1부.

[붙임 1]

상담 신청서

신청일: 년 월 일

1.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 만 세	성별
소속	학과/부서	학년 학기 (재학 / 휴학)	학번/직번
전화번호	E-mail		

2. 상담신청 내용

인권 고민	인권침해 문제	*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 () * 인권침해 () * 기타 ()
----------	---------	---

3. 내방 경위

<u>1. 자진해서</u> ①안내 팜플렛 보고 () ②포스터를 보고 () ③인터넷을 통해 () ④기타()	<u>2. 권유로</u> ①친구의 권유로 () ②선후배의 권유로 () ③교수님의 권유로 () ④가족의 권유로 () ⑤기타()
--	--

4. 상담 가능한 모든 시간에 표시해주세요

시간	9시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월							
화							
수							
목							
금							

4. 이외에 하고 싶은 말

--

[붙임2]

신 고 서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접수자: _____ (서명)

신 고 인	이 름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피 해 자	이 름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대리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피 신 고 인	이 름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1. 피해사실

-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을 당하였습니까?

① 때 :

② 장소:

③ 피해자와 피신고인간의 관계 :

이성친구 ☐ 동료 ☐ (학과, 부서, 동아리의 동기 및 선후배) 교수 ☐

교직원 ☐ 기타 ☐ (구체적: _____)

④ 피해 내용 (간단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피해발생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

⑥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피신고인의 반응

⑦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규정에 따른 가해자 처벌 등 ☐

법적 대응 ☐

개인적 수준의 대응 ☐

기타 ☐ ()

2. 증인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을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 뒷면에 첨부하고 서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_____ (서명 또는 날인)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민감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민감정보처리 목적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 및 해당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개인정보 보유기간	20 . . . ~ 5년(학생)/10년(교·직원) ※ 행안부 국가기록원 대학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2021.11)
개인정보/민감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가족사항, 이메일, 직원번호, 학번, 신고사건 내용 등
관련 문서 또는 파일 명	상담신청서, 신고서, 진술서 등 인권침해 상담 관련 자료
개인정보 취급자	부서 :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담당자 : 박 다희 연락처 : 043) 249-1612
제3자 제공여부	없음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인권위원회, 충북대학교 인권상담소	

-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의 목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불이익은 없으나 상담 및 사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는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 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방법은 전화, eail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공자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제공자의 별도 요구가 없어도 자동 파기됩니다.)
- 우리 대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민감정보처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